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26

제출일자 : 2021. 3. 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총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신설(안 제4조)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여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회계법」 제38조 제3항
- (2)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 단체 금고 지정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 25. ~ 2. 1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4조(금고의 수)----- ----- ----- -----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달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 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 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 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 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된 경우 만점처리 가능	3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19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별표2】

달성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안)

1. 일반원칙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다. 제나호에 불구하고 항목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3가(지역주민이용 편리성), 항목 5가(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의 경우 평가 등급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설치 대수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세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체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1) 지역사회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과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